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6. 14 선고 2020가단2036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남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1. 22. 접수 제8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 23. 접수 제23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25. 접수 제3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25. 접수 제3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767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4.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4. 10. 11.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D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되, 50,000,000원은 2014. 8. 28.까지, 나머지 450,000,000원 중에서 200,000,000원은 2015. 8. 31.까지 지급하되 서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2016. 8. 31.까지 변제하되 서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D이 위 5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D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E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를 각 접수하여 집행해제가 되도록 한다.

3. 원고는 2016. 8. 31.까지 D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250,000,000원)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2019. 8. 31.까지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4. 만약 D이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50,000,000원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D은 원고에게 위 금원과 2016. 9. 1.부터 위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D의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하여 D의 대표이사 C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D의 대표이사 C과 2018. 1. 16.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1. 22. 접수 제800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 23. 접수 제2327호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25. 접수 제300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전남 완도군 F 도로 30㎡, 전남 해남군 G 창고용지 986㎡, H 창고용지 2,333㎡, I 창고용지 1,424㎡,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K단체의 청구금액 3,060,950,319원의 가압류, L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670,750,080원의 가압류, L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652,346,756원의 가압류, K단체의 청구금액 2,960,434,082원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창고용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20. 10.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M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C은 2016. 2. 17. N과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5. 8.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8. 5.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C의 사해행위를 알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5.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8. 5. 16.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알았던 것을 넘어 C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C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C의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2. 28.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다시 2022. 4. 21. 사해행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2022. 2. 24.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부진술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이 D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9. 8. 31. 성립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D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2019. 8. 31.까지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8. 31.까지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2019. 8. 31.에 위 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1)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권자 N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8. 1. 1. 기준 42,480,075원(=70,215㎡×605원)이고 2020. 1. 1. 기준으로 하더라도 44,726,955원(=70,215㎡×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N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전남 완도군 F 도로 30㎡, 전남 해남군 G 창고용지 986㎡, H 창고용지 2,333㎡, I 창고용지 1,424㎡,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7,344,481,237원의 각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창고용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20. 10.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M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③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N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8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C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은 2016. 7. 19. 피고에 대하여 2012. 1. 5.자 대여금청구채권에 따라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작성 증서 2016년 제2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는 2016. 1. 11.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J 대 61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5. 1.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17. 6. 27.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창고용지 986㎡, H 창고용지 2,333㎡, I 창고용지 400㎡, P 창고용지 1,424㎡에 관하여 2015. 1.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227호로 대여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은 피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C은 2020. 12. 11. D 및 D의 대표이사 Q의 대리인 겸 채무자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2017. 12. 9. 800,000,000원을 D, Q, C에게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2020. 12. 21. 8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작서 증서 2020년 제7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⑥ 피고의 대표이사 S은 "피고가 D에 유체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22.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고가 2012. 1. 5.경 D에 8억 원을 대여하고 유체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체동산을 S이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시가 1억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75호), 위 판결에 대하여 S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21. 4.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S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노262호), 이에 S은 대법원 2021도558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S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D에 대한 8억 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와 같이 D 또는 C과 형성해 온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의 가압류를 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가압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